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공표 양식》

※ 본 자체평가 결과는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최종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향후 오류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일부 공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2025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자체평가 결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정한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적합함.

2. 평가영역별 자체평가 결과의 개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2025년 자체평가의 평가영역별(1.단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평가영역	평가결과	
	적 합	부적합
1. 학 생	○	
2. 교 원	○	
3. 교육환경	○	
4. 교육과정	○	
5. 교육성과	○	

* 해당하는 칸에 “○”로 표시함.

3. 평가지표별 불충족 사항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평가지표(4.1.3., 4.3.2.단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지표 4.1.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4.3.2. “법문서 작성”

가. 평가지표 4.1.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 (4)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개설·운영)

- 충족기준 : 평가직전 최근 3년간 10개 교과목 이상 또는 “서로 다른 6개 교과목 이상” 개설하여 강의
- 현황 : 직전 3개년간 외국어강의 교과목이 총 4개 개설·운영되어, 평가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교할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나. 평가지표 4.3.2. “법문서 작성” ◎ (2) (강의규모의 적정성)

- 충족기준 : 강의규모는 20인 이내 운용
- 현황 : 2024학년도 개설된 “법문서 작성” 교과목 중 수강인원이 기준(20명)을 초과하여 운영된 사례가 있음